

4. 租稅減免規制法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財政經濟院 公告 第1997-7號 1997. 2. 3

주요 골자

- 가. 종전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중 종업원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수가 한달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,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연간 월평균 인원이 기준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함.
- 나.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기술·인력개발 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요원과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일치시키고,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및 기술자문료 등 대상비목의 범위를 확대함.
- 다.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,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정함.
- 라. 동일자에 가입한 2 이상의 통장이 있는 경우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 1통장 판정기준을 납세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다른 통장의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비과세적용 배제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택한 통장으로 정함.
- 마.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 및 유통산업 합리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.

개정 취지

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(1996. 12. 30, 법률 제5,195호)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(1996. 12. 31, 대통령령 제15,197호)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중소기업판정기준 및 기술·인력개발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